

세법은 전반적으로 나이도는 중상정도에 해당하며, 수험생분들이 헷갈릴만한 지문들이 꽤 있어 아리송한 문제에서 틀렸다면 좋은 점수를 못 받았을 수 있습니다. 한 세목에 국한하지 않는 종합사례들도 몇몇 출제되었으며, 간단한 계산문제도 2문제 정도 출제되었으나, 시간압박이 심한 공무원 시험에서 실수할 확률이 높아 시험이 꽤 까다로웠던 것으로 보입니다. 참고로 막판 특강에서 정리한 최근 타시험 기출문제에 주요 지문이 꽤 출제되었다.

【문 1】 ④

재화를 수입하는 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「관세법」에 따라 수입을 신고하는 세관의 소재지로 한다.

【문 2】 ②

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이다.

【문 3】 ①

납세자란 납세의무자(연대납세의무자와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경우의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)와 세법에 따라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.

【문 4】 ④

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.

【문 5】 ③

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으로서 선적되지 아니한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것은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.

【문 6】 ①

- ㄴ. 등기된 부동산임차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에 포함된다.
- ㄷ. 지상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에 포함된다.
- ㄹ. 영업권의 단독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.

【문 7】 ③

법인이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에 따라 산정한다.

【문 8】 ④

- ㄱ.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법인세를 환급받은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
【문 9】 ①

당기순이익	100,000,000
토지 임의평가이익	(-) 10,000,000
각 사업연도 소득금액	90,000,000

① 소액주주의 임원의 사택유지비와 우리사주조합 운영비는 복리후생적 성질로 보아 손금으로 인정한다.

② 비상근임원에게 지급한 보수도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손금으로 인정한다.

【문 10】 ③

명의위장, 차명계좌의 이용을 통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부분조사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2회를 초과하여 실시할 수 없다.

【문 11】 ③

재해를 입은 자산에 대한 외장의 복구·도장 및 유리의 삽입에 대한 지출은 수익적 지출에 해당한다.

Cf. 재해 등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본래의 용도에 이용할 가치가 없는 건축물·기계·설비 등의 복구에 대한 지출은 기본적 지출에 해당한다.

【문 12】 ②

납세담보는 보석 또는 자동차와 같이 자산적 가치가 있더라도 법에 열거되지 않은 경우 제공할 수 없다.

【문 13】 ④

공적연금소득의 수입시기: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

【문 14】 ③

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한다. 법인세법과 달리 소득세법에서는 신규 사업자 등의 최초 과세기간 및 폐업자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아니하다.

【문 15】 ④

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지정납부기한의 연장기간에는 진행되지 아니한다. ∴ 정지사유

【문 16】 ②

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상의 채권(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)은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.

【문 17】 ③

면세사업	100,000	
공통매입세액 중 면세사업분	80,000	20만원 × 200/500
계	180,000	

【문 18】 ④

- ① 수시부과 후 추가로 발생한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.
- ②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양도로 보는 경우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- ③ 세무조사의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.

【문 19】 ③

- ①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.
- ② 사업자가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그 세금계산서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.
- ④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을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.

【문 20】 ②

구 분	기타소득금액	계산근거
1. 산업재산권 양도	120만원	300만원 - Max[150만원, 300만원 × 60%]
2. 일시적인 원고료	120만원	300만원 - Max[100만원, 300만원 × 60%]
3. 일시적인 강연료	160만원	400만원 - Max[100만원, 400만원 × 60%]
4. 직무발명보상금		연 500만원까지 비과세
계	400만원	